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교 육 위 원 장

## I . 수정이유

-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수를 조정하고, 위원 자격을 특정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## II . 주요내용

-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인원수와 자격요건을 수정함(안 제7조제 1항 및 제3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“대학교수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”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<b>제7조(지원위원회의 구성)</b>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b>15명</b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<b>대학 교수 및 청소년 지도사 등의 외부전문가</b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	<p><b>제7조(지원위원회의 구성)</b>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b>10명</b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<b>외부전문가</b></p> <p>5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④ ~ ⑦ (원안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학생자치활동”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 학급회, 동아리 등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·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행정·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계획의 수립)**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
2.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
3. 전년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, 개선 방안
4. 핵심 과제별 추진 로드맵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사항

**제5조(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)**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제6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.

1.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·시행
2.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학생자치활동 운영 성과와 과제
4.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
5.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지원위원회의 구성)**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2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의 장
3.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
4.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
5.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수)**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, 학부모,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,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9조(표창)**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이 우수한 학교나 교원,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